

# 조문별 개정이유서

## □ 제·개정 대상

- 「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표2

## □ 제·개정 이유

-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의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시간 조정을 통하여, 종사자 양성과정 합리화 및 규제 완화 추진

## □ 주요 제·개정 내용

- 성매매피해 상담소 등의 종사자 양성교육과정 이수시간 조정  
※ 총 120시간 → 총 100시간

## □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## □ 입법효과

- 종사자 양성과정 합리화 및 규제 완화

## □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